

『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4월 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세계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시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정책의 시행과 시행기관간의 협업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필요함.
- 정부의 공적개발원조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사업에 발맞추어 시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등 상생발전의 기회창출을 위한 기본규정 마련 필요.
- 또한,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체계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그 밖에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함 (안 제명)
-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조례의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함.
 - 마이스산업과 분리 및 「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라 “국제회의” 규정 삭제
(안 제2조, 제3조제2항, 안 제5장)
 - 구별실익이 없는 “자문관과 고문”을 “자문관”으로 통합 (안 제3장)
 - 투자유치단장 및 관련부서 당연직 위원 정비(안 제23조제3항)
-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유관부서(기관, 단체)와의 협력강화,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
 - 총괄부서와 주관부서 협조 (안 제2조제3호)
 - 국제관계실무협의회 운영 (안 제29조)
 - 국제교류협력 등에 대한 공조강화 (안 제33조)
- 「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조례」를 본 조례에 통합 (안 제4장)
- 외국기관 유치 시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함 (안 제20조)
-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라 기본규정 신설 (안 제32조)
 -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공적개발 원조사업 추진
 -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(민간단체)와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
- 교류사업 활성화와 조례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규정보완
 - “외국기관”을 용어 정의에 추가 (안 제2조제2호)
 - 정기적인 국제교류행사 개최규정 신설(안 제7조제3항)
 - 시 명예대사 신설운용 (안 제9조제3항)

- 자문관 활동토론회 규정 삭제
- “국제도시화위원회” 간사를 총괄부서 장으로 변경(안 제23조제4항)
- 그 밖에 조례용어 및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

3. 자치법규안 : #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국제사회 추세에 걸 맞는 장기 비전과 전략, 발전 방향을 정립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제기구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.

가.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·전문기구

나. 정부 간 기구 및 준정부 간 기구

다. 국제 비(非)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국제기구

2. “외국기관”이란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사무소를 말한다.

3. “총괄부서”란 국제협력담당관실을 말하고 “주관부서”는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 유치·관리,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소속 각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계획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가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국제도시 중장기 비전과 전략
2.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유치·지원에 관한 사항
3. 해외 자매·우호 도시 교류 활성화 방안
4.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방안
5.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·관리

제4조(기본원칙)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정(이하 “자매결연 등”이라 한다)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.

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.

③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.

제5조(검토사항)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추진할 경우 대상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도시 간의 행정규모, 지역여건, 교류의 적정성 등 제반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요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.

1. 면적, 인구 및 행·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
2. 산업,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
3.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
4.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
5. 역사적,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
6. 그 밖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

제6조(체결절차)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외국도시와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내실화) ①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·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에서 재난, 재해 등이 발생하여 복구 및 구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복구 및 구호 경비·장비·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자매도시, 우호도시, 주요 해외도시 등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증진되도록 정기적으로 교류행사를 개최하도록 노력한다.

제8조(결연취소) 시장은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장 국제자문관 등 운영

제9조(위촉) ① 시장은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

(이하 “자문관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.

1. 시의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
2.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
3. 투자·무역·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그 밖에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시장은 자문관을 역할, 목적, 책임 등에 따라 세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인천광역시 명예대사(이하 “명예대사”라 한다)를 별도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역할) 자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.

1. 시 홍보 및 위상제고
2.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·단체·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
3. 국제기구·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, 국제행사 유치·개최
4. 시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
5.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
6.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

제11조(임기)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자문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2조(의무) ① 자문관은 역할의 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자문관은 국가 및 시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문관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관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안사항은 수시로 통

보하며, 그 밖에 시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.

제13조(활동지원) ① 시장은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및 활동비와 자문관과 명예대사를 초청할 시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초청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그 밖에 자문관과 명예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.

제4장 시민명예외교관 운영

제14조(위촉) 시장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각 어권별로 인천광역시시민명예외교관(이하 “명예외교관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15조(역할 및 의무) ① 명예외교관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각종 국제행사 및 외국 인사 방문 시 안내 및 통역
2. 시 거주 외국인의 불편 사항 제보
3. 시민 외국어교육 지원
4.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증진

② 명예외교관은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가와 시의 이익과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임기) 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이 제15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활동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17조(활동지원) ① 명예외교관의 활동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명예외교관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, 필요시에는 교육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그 밖에 명예외교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.

제5장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유치·지원

제18조(유치검토) 시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(이하 “국제기구 등”이라 한다)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효과, 유치의 적정성 및 재정여건, 외교적 특수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유치지원)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0조(의결 및 보고) ① 시장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시장은 유치한 국제기구 등에게 행정·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,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유치·지원의 취소) 시장은 국제기구 등의 유치·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6장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 운영

제22조(목적 및 기능) ① 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에 대한 제반 시책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

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발굴,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
3. 국제기구 등의 유치 및 행정·재정적 지원 사항과 이미 유치한 국제기구 등과의 연장계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제도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심의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2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위원은 투자유치단장, 보건복지국장, 문화관광체육국장, 경제산업국장,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, 국제관계대사로 하고,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시의회 의원
2. 국제기구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·전문단체의 임직원
3.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24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25조(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26조(위촉해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1.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제2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제27조(위원장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.

제28조(운영)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심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9조(국제관계실무협의회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업무조율, 정보공유와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관계실무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국제 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 부서·기관, 시 출자·출연 기관 또는 시 유관기관·단체를 대표하는 간부인사
2. 국제관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제30조(자료제출 등)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,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1조(수당) 제22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와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인천광역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장 국제개발협력 및 공조강화

제32조(국제개발협력사업) ① 시장은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·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시와 국제교류관계가 있는 지역
2.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및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「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33조(협력 및 지원) ①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 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 수행을 위해 총괄부서는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에 관한 정보·통계를 취합·관리하고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화의 증진과 내실화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한다.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자료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화 제고를 위하여 국내·외의 기관·단체·국제기구 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,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3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제자문관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국제고문은 국제자문관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인천광역시 시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0조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【별표】

시민명예외교관 실비지급 기준 (제17조 관련)

(1일 기준)

4시간 미만	4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8시간 이상
1회 40,000원	1회 60,000원	1회 100,000원

※ 다만, 시민외국어교육 지원 시에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료 취득비 10,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.